##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52 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 김동아·허성무·임호선

박균택 • 추미애 • 김남근

김영호 • 박정현 • 이정문

김문수 · 허종식 · 한준호

김준혁 • 전재수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,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60조).

법률 제 호

##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전문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)	제60조(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
	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
	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
	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.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	$\underline{3} \cdot \underline{4}$ (현행 제2항 및 제3항
	과 같음)